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 및 수입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 및 수입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벼	439,293 톤	684
1006.20.1000	메현미		684
1006.20.2000	찰현미		684
1006.30.1000	멥쌀		684
1006.30.2000	찹쌀		68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684
1102.90.2000	쌀가루		684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684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68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684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		684

1901.20.9000	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벼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006.20.1000	메 현미	145	
1006.20.2000	찰 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찰쌀	14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5	
1102.90.2000	쌀가루	14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4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4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45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 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 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145	

1901.20.1000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20	새싹삼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태블릿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	
1211.20.9900	기타	41,583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41,583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41,583	
1302.19.1290	기타	41,583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41,583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41,583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